

# 예 산 총 칙

제1조 :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329,044,466	9,871,334
1. 일반회계	320,070,351	9,602,111
2. 특별회계	8,974,115	269,223
의 료 보 호 기 금	759,099	22,773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818,229	24,547
주 차 장	6,245,801	187,374
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	194,082	5,822
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	574,577	17,237
기 반 시 설 사 업	90,500	2,715
지 하 수 관 리	291,827	8,755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 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,900,000천원이다.

제6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1,765,854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